

서울특별시의회
제326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4. 9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최근 혼인을 감소 및 독신가구 등 증가에 따라
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인 가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,
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
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특히,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조례 규정 외에
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도 지원 조항을 확대하고,
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등에도
적극적으로 지원을 조장하는 등 환경적 피해 최소화를
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- 이에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,

추진계획 수립 시 민간 확산 및 시민 참여 활성화,
우수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,
시장이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, 제5항의 경우,
민간 확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있어
연구 조사 사업 신설 및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
설치 및 지원 시,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
취약한 지역에 한하도록 규정하고,
법인,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
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안 제9조의 경우,
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및 기업의 지정 등에 대해
별도 조항을 분리하고,
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, 객관성 확보,
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별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그 외 안 제4조, 제6조, 제7조의 경우,
불완전한 자구 등 수정 및 불필요한 내용 중복을 방지하고자
삭제 및 기타 조문 제목을 구체화하는 등

조례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
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